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9. 14 선고 2020가단12865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원

피 고 1. 망 B의 소송수계인

가. C

나. D

다. E

라. F

2. G

변 론 종 결 2021. 8. 17.

판 결 선 고 2021. 9. 14.

주 문

1. 원고에게, 피고 C은 1,902,412원 및 그중 666,666원에 대하여, 피고 D, 피고 E, 피고 F는 각 1,268,275원 및 그중 444,444원에 대하여 각 2020. 5. 27.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.8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2. 가. 망 B과 피고 G 사이에 2019. 10. 2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
나. 피고 G은 피고 C에게 위 각 부동산 중 6/99 지분에 관하여, 피고 D, 피고 E, 피고 F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4/99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H 주식회사는 2015. 2. 3. B에게 2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17. 7. 20.,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.894%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

나.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, H 주식회사는 2015. 10. 12. I 주식회사에, I 주식회사는 2018. 10. 26.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각 양도하고, 각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.

다. B의 부 J은 2019. 4. 3. 사망하였다. 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G, 자녀들인 K, L, B, M이 있었다. J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. 10. 21. J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을 피고 G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고 한다)를 하고, 2019. 10. 31.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없었고,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외에도 N회사에 대한 채무 7,000,000원, O은행에 대한 채무 3,000,000원,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채무 55,717,000원이 있었다.

마. 2020. 5. 26. 기준으로 위 차용금 중 B이 미지급한 금액은 원금 2,000,000원, 이자 및 지연이자 3,707,238원 합계 5,707,238원이다.

바. B은 2020. 8. 6. 사망하였다. 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, 피고 E, 피고 F가 있다.

[인정근거] ○ 피고 G : 자백간주 ○ 피고 C, D, E, F : 갑 제1 내지 9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고 C, D, E, F에 대한 청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망 B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5,707,238원 및 그중 원금 2,000,000원에 대하여 2020. 5. 27.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4.8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, 피고 C, D, E, F는 각 상속지분에 따라 망 B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공동상속하였다. 따라서 원고에게, 피고 C은 1,902,412원(= 5,707,238원 × 상속지분 3/9, 원 미만 버림, 이하 같다) 및 그중 666,666원(2,000,000원 × 상속지분 3/9)에 대하여, 피고 D, 피고 E, 피고 F는 각 1,268,275원(= 5,707,238원 × 상속지분 2/9) 및 그중 444,444원(= 2,000,000원 × 상속지분 2/9)에 대하여 각 2020. 5. 27.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.8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G에 대한 청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망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, 망 B은 2019. 10. 21.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을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더 심화시켰으므로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당시 망 B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채무자 망 B의 사해의사는 추인된다.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2/11 지분에 관한 이 사건

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G은 망 B의 상속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/99 지분(= 망 B의 지분 $2/11 \times$ 피고 C의 상속지분 $3/9$)에 관하여, 같은 피고 D, 피고 E, 피고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4/99 지분(= 망 B의 지분 $2/11 \times$ 위 피고들의 지분 각 $2/9$)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.

판사 이재은

부동산 목록

1. 당진시 P 대 659㎡
2. 당진시 Q 답 476㎡
3. 당진시 R 전 390㎡
4. 당진시 S 임야 653㎡
5. 당진시 T 전 2705㎡
6. 당진시 U 임야 584㎡ 끝.

